

등록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	2012년 4월 20일
위원정수 7명	재적위원 6명

(1) 일 시 : 2012년 4월 23일(월) 14:30

(2) 장 소 : 기획실장실

(3) 안건 및 심의 결과

가. 안 건 :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사항

나. 심의결과 : 법인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 한다

(4) 회의내용

위원장 : 성원이 되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 내용은 지난번 회의와 같은 내용입니다.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선 계획서를 첨부하여 재 심의 해 줄 것을 요구하여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의자료 중 재조정 안을 보시면 3년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조정 전에는 16억여원 이었고 조정 후에는 14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

구자윤 : 제 의견은 전과 동일하게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.

허남윤 : 법인부담 학교부담 미승인시 향후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등록금심의 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결과 미승인일 경우의 계획을 말 하는 것인가요?

위원장 : 승인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므로,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.

허남윤 :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, 원칙대로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등록금심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승인여부를 논하는 것 보다는 대학의 입장에서 법정 부담금을 법인에서 제시한 개선계획에 대한 심의로서, 3년간의 학교부담이 문제된다면, 기간을 조정하여 법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 정도로 기간을 줄이고, 부담액을 올려 달라는 등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

이윤하

1/3 홍광석

이윤하

원본대조필

홍양석 : 지난번 학생회 의견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법정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. 저희가 학생의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. 또한 저희가 이 회의에서 동의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안건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이 된다면 법으로 위법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홍양석 위원 의견은 원칙대로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요?

홍양석 : 예, 그렇습니다.

위원장 : 또, 다른 학생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김진혁 : 법인의 납부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1년~2년 동안은 100%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이후 계획을 가지고 논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2012학년도는 100%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?

김진혁 : 예, 그렇습니다.

허남윤 :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지만, 법인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차등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법인에서 제시한 계획을 보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. 2012년도에 부담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제시하고 차기년도부터는 부담액을 늘려서 3년 뒤에는 100% 부담한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정리해보면 법인 개선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은 기간이나 부담액에 관계없이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

위원들 : 예, 동의합니다.

위원장 : 이것으로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간서명은 3인으로 하겠습니다.

위원들 : 예,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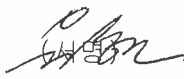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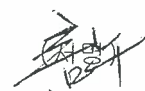




위원장 허남윤

2/3 홍양석

이윤하

인본대조필

2012년 4월 23일

위원장 :	유	환	
위 원 :	허	남	
위 원 :	구	자	
위 원 :	김	진	
위 원 :	홍	양	
위 원 :	이	을	

오산대학교 등록금심의 위원회